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운영규정

【제정 2018. 1. 15.】

제1장 총칙

제1조(목적) 이 규정은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제2조(적용범위)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(이하 “이사회”라 한다)의 운영에 관하여는 관계법령 및 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정관(이하 “정관”이라 한다)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정을 적용한다.

제3조(기능) 이사회는 사천시 시설관리공단(이하 “공단”이라 한다) 업무와 관련하여 관계법령 및 정관에서 정한 중요사항 등을 심의·의결한다.

제2장 구성

제4조(구성) 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전원으로 구성한다.

②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는 부의된 안건을 심의하고 표결에 참여한다.

제5조(이사회 의장 및 회의소집) ① 이사회의 의장은 이사장이 된다.

② 이사회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되거나, 이사 3인 이상의 요청이 있을 때 이를 소집한다. 다만, 이사회 의장 신분과 관련된 사항은 감사가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.

제6조(간사) 이사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, 이사회를 주관하는 간사는 경영지원팀장으로 한다.

제3장 의안

제7조(의결사항)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.

1.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에 관한 사항
2.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, 규정의 제·개정 및 폐지에 관한 사항
4. 조직, 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5. 중요재산의 취득, 처분 및 임대차에 관한 사항
6. 중요한 대행사업의 위·수탁 등에 관한 사항
7. 중요한 소송 및 화해에 관한 사항
8. 위원회의 위원 추천에 관한 사항
9. 임원(당연직은 제외한다)의 징계 등에 관한 사항
10. 그 밖에 공단운영에 필요하다고 이사장이 인정하는 사항

- 제8조(안건접수)** ① 이사회의 부의안건은 의결사항과 보고사항으로 구분한다.
- ② 부의안건은 소관팀에서 입안하여 관계팀과 협의를 거친 후 이사장의 결재를 받아 부의안(별지 제1호 서식)을 이사회 개최 10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.
- ③ 간사는 부의안을 접수순서에 따라 의안접수부(별지 제2호 서식)에 기록하고 의안번호를 표기하여야 한다.

제4장 회의절차

- 제9조(회의통지)** ① 간사는 이사회 의장의 명을 받아 회의개최 1주일 전에 이사 및 감사에게 부의안건을 첨부하여 회의 개최계획을 통지하여야 한다. 다만, 재적이사 3분의 1 이상의 동의가 있을 때에는 회의개최 전일까지 통지할 수 있다.
- ② 제1항의 통지서(별지 제3호 서식)에는 회의목적, 개최일시, 장소 및 의안 제목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.

제10조(의안설명) 이사회의 부의 안건은 제안팀의 장이 설명한다. 다만,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직원을 출석시켜 의안에 관한 대리설명이나 의견을 진술하게 할 수 있다.

제11조(의견청취) 이사회는 의안심의에 필요한 경우에는 전문가 또는 관계인을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들을 수 있다.

제12조(연기 및 속행) ① 이사회는 필요한 경우에 개최중인 이사회 의 연기 또는 속행의 결의를 할 수 있다.

② 제1항에 따른 연기 또는 속행 이사회에 대하여는 회의소집 통지를 하지 않을 수 있다.

제13조(의결방법)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하고,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 다만,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.

1. 공단의 사업계획 및 기본방침 결정에 관한 사항
2. 예산과 결산의 승인에 관한 사항
3.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
4. 조직·기구 및 정원에 관한 사항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의결에 있어 가부동수인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.

제14조(이사회 참여제한) ① 공단의 임원은 본인 또는 본인의 직계존비속,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의결이 예정된 이사회에는 당해 안건의 심사와 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. 다만, 전반적인 운영문제가 심의될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.

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에 참여할 수 없는 임원은 회의 성립을 위한 재적위원 속에 포함되지 않는다.

제15조(감사의 진술)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. 다만, 표결권은 가지지 않는다.

제16조(의결방법의 특례) ① 이사회 의장은 이사회 부의안건 중 경미하다고 인정되는 안건에 대하여는 이사회를 소집하지 않고 서면결의서(별지 제4호 서식)로써 재적이사 과반수 이상의 동의를 얻어 이사회 의결에 갈음할 수 있다. 이 경우에는 차기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② 이사회 의장은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서 이사회를 개최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때에는 이사회 의결 없이 이를 집행할 수 있다. 다만, 다음 이사회에 그 전말을 보고하여 그 추인을 얻어야 한다.

제17조(재심의 요청) ① 이사장은 이사회 의결사항 중 집행상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안에 대해서는 시행을 보류하고, 1회에 한하여 의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이사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. 이 경우 의장은 지체 없이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.

② 제1항에 따라 재심의를 요청할 경우에는 심의자료를 보완하여 부의하여야 한다.

제18조(권한의 위임) ① 이사회가 경미하거나 긴급을 요하는 사항으로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때에는 제7조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이사장에게 한시적으로 위임할 수 있다.

② 이사장이 제1항에 따라 그 권한을 위임받아 처리한 경우에는 이사회에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.

제19조(의결사항의 통보) ① 간사는 이사회 종료 후 부의안건에 대한 의결서(별지 제5호 서식)를 작성하여 출석이사 전원의 서명날인을 받아야 한다.

② 간사는 이사회 의결사항을 1주일 이내에 이사회 의결통보서(별지 제6호 서식)로 관계팀에 통보하여야 한다.

제20조(회의록 등의 보존) ① 간사는 이사회 개최 경과를 기록한 회의록(별지 제7호 서식)을 작성하여 의장과 출석한 이사 및 감사의 서명날인을 받은 후 주된 사무소에 보존한다. 단, 이사회에서 기록대표위원을 지정할 때에는 3명 이상의 기록대표위원의 서명날인으로 같음할 수 있다.

② 간사는 의사록 내용을 차기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
③ 제1항의 회의록 및 서면결의(별지 제4호 서식) 및 부의원안은 영구 보존하여야 한다.

제21조(수당의 지급 등) 이사회에 참석하는 비상임이사(사천시의 당연직이사는 제외한다), 전문가 또는 관계인, 참고인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이사회 출석수당과 그 업무수행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.

제22조(그 밖의 사항)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 중 특히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 의결을 거쳐 시행하고, 일반적인 사항은 관례에 따른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공단의 설립일로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경과규정) 이 규정 시행일 이전에 시행된 사항은 이 규정에 의하여 시행된 것으로 본다.

[별지 제1호 서식]

부 의 안

제 회 이 사 회			
년 월 일	20 . . .	의안번호	제 호
의 제			
구 분	<input type="checkbox"/> 의 결 사 항	<input type="checkbox"/> 보 고 사 항	
1. 제 안 자			
2. 주 문			
3. 제안사유			
4. 의결사항			
5. 참고사항			
가. 제안근거			
나. 예산조치			
다. 합 의			
라. 절 차			
마. 기 타			
6. 첨부자료			

[별지 제3호 서식]

제 회 이사회 소집통보

수 신 : 귀하

다음과 같이 이사회 소집을 통보하오니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1. 회의목적 :
2. 일 시 :
3. 장 소 :
4. 의 안

의안번호	의 안 제 목	제 안 자	소관팀

5. 의안내용 : 별첨. 끝.

20 년 월 일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(인)

제 회 이사회 서면 결의서

제 목 :

표제의 별첨사항을 이사회에 부의함이 없이 서면으로 동의를 얻어 집행
코자 하오니 찬성여부를 기록하신 후 기명 날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첨부 : 부의안 1부. 끝.

20 년 월 일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(인)

직 위	성 명	찬 성	불 찬 성	기 타 의 견
의 장				
이 사				
이 사				
이 사				
이 사				
이 사				
이 사				

[별지 제5호 서식]

제 회 이사회 의결서

일 시		장 소	
소 관 팀		제 안 자	

의안번호	안 건 명	의 결 내 용	비고

위와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.

20 년 월 일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

이사장 (인)
이 사 (인)
이 사 (인)
이 사 (인)
이 사 (인)
이 사 (인)
이 사 (인)

[별지 제6호 서식]

이사회 의결통보서

수 신 : 귀하

제 회 이사회에 (. .)에 부의한 안건은 다음과 같이 (원안의결, 수정, 부결, 보류) 되었음을 통보합니다.

다 음

의안번호	안 건 명	의 결 사 항	비 고

첨 부 : 관련안건 각 1부. 끝.

사천시 시설관리공단 이사회 의장 (인)

[별지 제7호 서식]

제 회 이사회 회의록

일 시	20		장 소	
출결사항	출석임원	명()		
	결석임원	명()		
참 여 자			기록자	
의결내역	보고사항	건		
	의결사항	건 (의결 건, 보류 건, 기타 건)		

첨부 : 회의내용 (의제별 주문, 제안사유, 의결사항, 참고사항 포함)

제 회 이사회를 개최하고 위의 내용과 같이 의결하였음을 확인 날인함

20 년 월 일

의 장 (인)

이 사 (인)

이 사 (인)

이 사 (인)

이 사 (인)

이 사 (인)

이 사 (인)

확인 감 사 (인)

의안번호	제 호	일 시		페이지	
발 언 자	발 언 내 용				